

쓰시마번(對馬藩) 무역서(貿易署)의 해체 과정에 대한 연구

조일무역관련 부채 정리 문제를 중심으로 *

김민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외교와 무역을 담당해 왔던 쓰시마번(對馬藩)¹이 조일무역 구조에서 퇴장하는 과정을 쓰시마번의 조일무역 부채 정리와, 조일무역을 관장하는 기구였던 무역서(貿易署)의 해체라는 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쓰시마번은 에도시대 동안 조선과 일본의 외교, 무역을 중개하였다. 그러나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들어선 일본의 신 정부가 조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시도하면서 그 위상이 흔들리기 시

김민(金旻)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공은 일본경제사. 주로 메이지 유신 이후, 19세기 후반의 조일무역과 무역금융을 연구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나가사키(長崎) 무역금융의 성장과 조일무역(朝日貿易)의 관계: 제18국립은행의 설립과 조선 진출 과정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1872~1876년 과도기의 조일무역연구」(『일본역사연구』 55권, 2021)가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2102886).

<https://doi.org/10.29154/ILBI.2022.27.182>

작하였다. 이윽고 1871년에는 일본 정부가 폐번치현(廢藩置縣) 조치를 단행하여 독립된 정치 조직으로서의 쓰시마번이 폐지되었고, 곧이어 외교권도 외무성으로 회수되었다. 이것은 조일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쓰시마번의 퇴장과 조일관계의 재편 과정에 대해서는 정치사, 외교사 분야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²

그럼에도 쓰시마번이 조일무역 구조에서 퇴장하는 과정을 부채 정리라고 하는 경제적 사안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는 데에는 두 가지의 의의가 있다. 첫 번째는 기존 연구에서 전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쓰시마번의 조일무역 부채 정리 문제와 이것이 원인이 되어 조일무역을 관장하는 번의 기구였던 '무역서'가 최종적으로 해체에 이르게 된 역사적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다. 무역서의 해체는 전통적인 조일무역 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사건이었음에도 기존 연구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³ 이는 무역서가 쓰시마번의 일개 기구에 지나지 않았던 만큼, 쓰시마번 폐지를 무역서 해체의 원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들여다보면, 쓰시마번 폐지 이후에 조선과의 무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역에 관련된 조직과 보유한 자산,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합의된 방침은 존재하지 않았고, 쓰시마번과 외무성, 대장성 등 이 사안에 관계된 조직의 이해에 따라 상이한 견해가 병존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무역서는 1871년 음력 8월경⁴ 쓰시마번 폐지 이후에도

1 쓰시마번(對馬藩)은 1869년 관직봉환 조치 이후 정식 명칭이 이즈하라번(嚴原藩)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사료에서 쓰시마번을 지칭할 때 폐번치현 이전에는 '이즈하라번' 이후에는 '구(舊) 이즈하라번'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쓰시마번으로 명칭을 통일하였다.

2 전통적 조일무역 체제는 외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만큼, 19세기 후반 조일무역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조선 정부와 쓰시마번, 일본 정부 3자 간의 외교적 교섭 과정과 이에 따른 조일관계의 재편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다음 2권의 연구서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다. 김홍수,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현명철, 『근대 변혁기 한일관계사 연구』, 경인문화사, 2021.

3 무역서의 대 조선 부채 내역 및 상환 문제를 둘러싼 일본 외무성과 조선 정부의 교섭 과정에 대해서는 김홍수, 현명철 등의 연구(각주 2 참조)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으나, 무역서의 자산 동결과 해체의 원인이 된 일본 내지 상인들에 대한 부채 내역과 청산 과정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 본 논문에서 날짜를 언급할 때는 음력인지 양력인지를 표기하였다. 기본적으로 1872년(메이지5)까

한동안 존속하다가, 1872년 음력 9월경, 당시 일본 외무성의 고위 관료였던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實)가 쓰시마번이 조선에 대해 체납하고 있던 무역 품을 상환한다는 명분으로 쓰시마 현지와 조선에 파견되었을 때 비로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고 해체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당시 무역서가 지고 있던 거액의 부채 정리 문제를 무역서 해체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두 번째 의의는 쓰시마번 무역서의 해체가 당시 조일무역 구조에 미친 경제적 파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쓰시마번 무역서의 해체는 조선과의 무역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던 쓰시마의 사족과 상인들은 물론이고, 무역 상대인 조선 정부와 상인들, 그리고 쓰시마번에 무역자금을 공급하던 나가사키와 도쿄의 상인, 자본가들 모두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힌 사건이었다. 이로 인하여 조일무역은 물류, 자본, 인력 등 모든 면에서 규모가 줄어든 상태에서 1872년 이후의 과도기적 무역상태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 주로 참고한 사료는 다음과 같다. 공무역 중단과 부채 청산 작업을 주도한 일본 외무성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조선사무서』(朝鮮事務書)와 『대한정책관계잡찬』(對韓政策關係雜纂)을 주로 참고하였다. 『조선사무서』에는 부채 상환 준비 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물론, 무역서의 자산과 부채 현황에 대한 조사표 등도 수록되어 있다. 한편 이 조사표 작성의 원자료가 되는 각종 장부의 사본, 차용증, 무역서 관리들에 대한 취조서 등은 『대한정책관계잡찬』에 수록되어 있어 많은 참고가 되었다. 또한 『태정류전』(太政類典), 『공문록』(公文錄) 등에 수록된 문서들을 통해 태정관(太政官), 대장성(大藏省) 등 타 기관의 동향도 살펴봄으로써 조일무역에 대한 일본 내의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지는 음력, 1873년(메이지6) 이후로는 양력 날짜로 표기하였다.

2. 폐번치현과 조일무역 회계

1) 쓰시마번 폐지 이전까지의 조일무역 개관

무역서 해체 과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무역서가 어떤 조직이고 무역서 해체의 원인이 된 부채는 왜 발생하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폐번치현 직전까지 쓰시마번이 조선과 어떻게 무역을 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19세기 후반 조일무역의 현황을 간략히 개괄하도록 하겠다.

쓰시마번이 조선과 무역을 하는 방식은 1609년 ‘기유약조’(己酉約條)가 맺어진 이래로 약 260년간 큰 틀이 유지되었다.⁵ 무역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쓰시마번에서 조선에 파송하는 사신(使臣)을 태운 세견선(歲遣船)을 보내어 일정한 외교적 절차를 밟아 이루어지는 ‘공무역’(公貿易)이었고, 다른 하나는 외교적 의례를 수반하지 않고 쓰시마 상인들과 조선 상인들이 정해진 날짜, 시간에 왜관(倭館)에 모여 상품을 거래하는 ‘사무역’(私貿易)이었다. 공무역은 무역 절차도 까다로웠고 거래하는 상품의 품목과 수량도 엄격히 정해져 있었다. 반면 상인들 간에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사무역은 거래 품목이나 수량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었으므로 공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무역이었다.

조선의 초량항(草梁項)에 들어가려는 일본 선박은 예외 없이 조선 정부가 하사한 도서(圖書)를 날인한 문서를 지참하여야 했다. 조선 정부는 오직 쓰시마도주(對馬島主)에게만 이 도서를 하사하였으므로, 쓰시마번은 일본이 조선과 교역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다. 이처럼 쓰시마번의 조선 무역은 물건을 신고 가서 교역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항허가증 발급, 항구 출입 관리, 사신 파송과 외교적 의례 수행, 사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에 대한 관리와 세금 징수 등 각종 복잡한 사무를 포괄하고 있었다. 본래 쓰시마번에서

5 전통적 조일무역 체제에 대한 설명은 田代和生, 『日朝貿易と對馬藩』, 創文社, 2007; 정성일, 『朝鮮後期 對日貿易』, 신서원, 2000 등을 참고하였다.

는 이러한 사무가 하나의 기구에 통합되어 있지 않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었으나, 1870년 ‘무역서’(貿易署)라는 기구를 새롭게 조직하여 조선 무역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총괄하게 하였다.⁶ 따라서 무역서의 역사 자체는 짧지만, 쓰시마번이 기유약조 체제하에서 약 260년간 지속해 온 조선 무역 사무를 집대성하여 탄생시킨 핵심 기구였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무역서는 1871년 음력 8월경 폐번치현 조치가 단행되어 쓰시마번이 사라진 뒤에도 1년 이상 존속하였다. 이는 쓰시마번 폐지 이후에도 전통적인 무역 방식이 여전히 기능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역서의 해체야말로 조일무역 체제 변동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위 전통적 무역체제하에서 이루어진 무역의 내용은 어떠한 하였을까? 쓰시마번의 조선 무역이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초반에는 주로 조선으로부터 중국산 백사(白絲)를 수입하고 일본에서 산출된 은(銀)을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이 주를 이루었으나, 19세기 중엽에는 조선으로부터 공무역품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되던 공목(公木, 무명)과 공작미(公作米, 쌀), 소가죽, 소뿔, 황금초(黃芩草)⁷, 인삼(人蔘), 말린 해삼(煎海鼠) 등을 주로 수입하고, 일본에서는 일본산 동(銅)과 외국에서 수입된 소목(蘇木)⁸, 물소뿔, 후추, 명반(明礬)⁹ 등을 수출하는 무역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¹⁰ 이 중에서 동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이나 네덜란드 상선을 통해서 나가사키로 유입된 수입품이었다.

6 무역서의 설립 목적과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김홍수,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185~186쪽에 자세히 다룬다. 김홍수의 연구에 따르면 쓰시마번은 1870년 음력 1월에 무역방(貿易方), 출납방(出納方), 생산방(生産方)을 통합하여 물화소(物貨所)를 설립하였으나, 같은 해 음력 5월에 다시 물화소에서 조선 무역 부분을 분리하여 무역서를 설치하였다. 무역서는 종래 군자서(軍資署), 선함서(船艦署), 감항서(監港署)의 조선 관계 사무도 인수하여 조선무역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쓰시마번이 무역서를 설립한 목적은 조선과의 무역을 확장하여 그 무역 이윤으로 번체를 상각하고, 식산의 기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7 황금초(黃芩草)는 주로 약용으로 사용되는 식물.

8 소목(蘇木)은 단목(丹木)이라고도 하며 주로 동인도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식물로, 붉은색 염료를 만드는 데 쓰였다.

9 명반(明礬)은 백반(白礬)이라고 하는데 염료를 추출하는 재료로 사용되었다.

10 18~19세기 조일무역의 구조와 상품에 대해서는 정성일, 『朝鮮後期 對日貿易』, 신서원, 2000, 206~211쪽 참조.

그런데 이러한 수입품은 나가사키의 당관(唐館) 또는 데지마(出島)라는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회소무역(會所貿易)을 통해서만 일본 국내로 유통되었다.¹¹ 이때 수입품을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인 가부(株)를 보유한 소수의 본상인(本商人)들이 상품을 독점했다. 따라서 조선에 수출하기 위한 상품을 조달해야만 했던 쓰시마번이 이러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본상인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중에서도 나가사키의 유력한 상인 가문인 나가미(永見), 다카미(高見), 마쓰다(松田) 가문의 상인들과 쓰시마번의 관계는 긴밀하였다.¹² 이들은 쓰시마번에 조선으로 수출할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본상인으로서 축적한 자본을 활용하여 쓰시마번에 무역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¹³ 뒤에서 무역서의 부채 내역을 살펴볼 때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나가미가의 당주인 나가미 덴자부로(永見傳三郎)를 비롯한 나가사키 상인들이 무역서의 최대 채권자로 등장하는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덧붙이자면, 나가미, 다카미, 마쓰다 가문 출신의 상인들은 1877년 나가사키에서 설립되어 조일수호조규 체결 직후부터 조일무역에 깊숙이 관여하는 제18국립은행의 주요 주주가 된다. 특히 나가미 덴자부로는 초대 은행장을 역임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처럼 나가사키 유력 자본가들의 조일무역 참여는 쓰시마번 폐지는 물론 조선의 개항 이후로도 연속되었다는 점을 지적해 두겠다.¹⁴

2) 쓰시마번 폐지와 조일무역 회계 이관 문제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들어선 일본의 신정부는 쓰시마번을 통해서 정권

11 나가사키의 회소무역(會所貿易)에 대한 설명은 長崎縣史編集委員會, 『長崎縣史 藩政編』, 吉川弘文館, 1973, 553쪽, 「長崎會所」 이하; 太田勝也, 『鎖國時代長崎貿易史の研究』, 思文閣出版, 1992, 565쪽, 「長崎會所貿易の成立」 이하를 참조.

12 나가사키 상인들과 쓰시마번의 관계에 대해서는 小山幸伸, 『幕末維新長期長崎の市場構造』, 御茶の水書房, 2006 참조.

13 나가미 가문이 본상인에서 고리대금업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武野要子, 「長崎商人・永見家の一研究」, 『福岡大學商學論叢』 34(2·3), 1989, 755~779쪽을 참조할 수 있으며, 쓰시마번과 나가미가의 금융관계에 대해서는 小山幸伸, 『幕末維新長期長崎の市場構造』를 참조.

14 김민, 「나가사키(長崎) 무역금융의 성장과 조일무역(朝日貿易)의 관계: 제18국립은행의 설립과 조선 진출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교체 사실을 조선 측에 통고하고 새로운 국교 관계를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조선 정부는 전통적인 교린 질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쓰시마번에서 파견한 사신이 가져온 문서도 받지 않았다. 이후 조선과 쓰시마, 일본 정부 3자 간에는 복잡한 외교적 교섭 과정이 진행된다.

이처럼 1868년 이래 일본이 조선과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에도 두 나라 사이에는 한동안 기존의 방식에 따른 무역이 이루어졌다. 쓰시마번이 조선과 무역을 할 때 조선으로부터 하사받은 도서를 사용하는 것이나 세견선을 파송하는 것을 두고 사사로운 교제(私交)라거나 그릇된 예(謬例)라는 비판이 일본 내부, 특히 외무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일본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태정관(太政官)에서는 1869년 음력 10월, 쓰시마번의 무역과 관련하여 “(조선과의) 무역은 더욱 번창하게 할 것이며 …, 세견선의 유례(謬例)는 단계를 밟아 바로잡아나가도록 할 것”¹⁵이라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또 조선에서 하사한 도서도 종전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조선과의 교섭도 쓰시마번을 통하여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같은 결정은 비록 “단계를 밟아 바로잡아” 나간다는 단서를 붙이기는 하였으나, 일본 정부가 일개 번(藩)에 외국과 교제할 수 있는 외교권과 단독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무역독점권을 인정해 준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통상조약을 체결한 여느 서양 열강과의 관계와 달리 수백 년간 외교와 무역을 지속해 온 조일관계의 특수성과 그 안에서 쓰시마번이 맡은 역할을 인정한 결과였다.

또 “무역은 더욱 번창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쓰시마번이 조선과 무역을 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지만, 무역 자체를 단절하거나 위축시킬 의도는 없었다. 태정관에서 이와 같은 방침이 확정된 이후에도 외무성 일각에서는 조일관계의 재편을 위해서 왜관 전면 철수와 무역 단절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은 약 3년 뒤인 1872년 음력

15 『大日本外交文書』 제2권 제3책, 158~159쪽.

8월 세건선 파견을 중지한다는 칙지(勅旨)가 내려질 때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¹⁶

그런데 1871년 음력 7월, 일본 정부는 번을 폐지하고 지방 행정 조직을 중앙정부 아래 부현(府縣)으로 일원화하는 폐번치현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것은 조선과의 외교와 무역이라는 특수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쓰시마번이라고 해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1871년 음력 8월, 결국 쓰시마번은 폐지되어 잠시 ‘이즈하라현’(嚴原縣)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하였으나 다음 달인 음력 9월 곧바로 사가현(佐賀縣)과 합병하여, ‘이마리현’(伊萬里縣)이라는 새로 설치된 현에 부속되었다.¹⁷ 이로써 옛 쓰시마번이 독자적으로 운영했던 행정과 재정은 모두 이마리현으로 이관되게 되었다. 이때 무역서 역시 쓰시마번 산하의 일개 기구였던 만큼 원칙적으로는 조일무역 관련 행정과 회계가 모두 이마리현으로 이관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싸고 조일무역을 오랜 기간 번영(藩營) 사업으로 운영해 온 쓰시마번과, 일본 정부의 재정을 관리해야 하는 대장성, 그리고 쓰시마번의 외교권을 회수하는 것이 과제였던 외무성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발생했다.

쓰시마번의 공무역은 명목상으로는 조선 정부가 쓰시마도주를 우대하여 도서를 하사하고 무역을 허락한, 말하자면 도주 가문인 소씨(宗氏)의 가업인 측면도 있으나 실상은 쓰시마번의 재정을 지탱하는 엄연한 번영(藩營) 사업이었다. 쓰시마번이 조선과의 무역을 통해서 얻은 무역 이윤이 쓰시마번 전체 재정 수입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였는지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연구자마다 조금씩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정성일의 연구에 따르면 1790년 한 해 쓰시마번의 재정 수입 중 무역 이윤이 차지하는

16 현명철이 조선 측 사료인 『東萊府啓錄』의 기록을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869년에는 11척, 1870년에는 13척, 1871년에는 16척의 세건선이 초량항에 입항하였다. 현명철, 「1872년 일본 화륜선의 왜관 입항」, 『동북아역사논총』 49호, 2015, 330쪽 참조.

17 이마리현은 1871년 음력 9월부터 1872년 음력 5월까지 짧은 기간 존속한 현으로, 현청은 현재의 이마리시(伊萬里市)에 설치되었다. 쓰시마는 1872년 음력 5월에 이마리현이 다시 사가현으로 원복됨에 따라 사가현의 일부가 되었다가, 음력 8월에 나가사키현(長崎縣)으로 이관되었다. 현재까지도 쓰시마는 행정구역상 나가사키현에 속한다. 對馬教育會, 『(改訂)對馬島誌』, 1940 참조.

비중은 무려 36%로 이는 쓰시마번이 영내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인 공조(貢租)나 막부로부터 받는 지원금보다도 비중이 컸다.¹⁸ 또 분세이(文政) 연간(1818~1830) 쓰시마번의 재정을 분석한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과의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쌀의 경우 전체 쌀세입의 약 28.2%, 금전 수입의 경우 전체 금전 세입의 23.8%를 차지하였다.¹⁹ 한편 폐번치현 직전인 1870년에 작성된 「대주국계」(對州國計)를 보면, 쓰시마번의 한 해 세입은 쌀 4만 3,621석(石), 금 3만 8,498량(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공무역을 통해 벌어들이는 쌀과 현금이 각각 1만 410석(24%), 2만 2,649량(59%)을 차지한다.²⁰ 어느 자료를 보더라도 조선과 무역을 통해 얻는 수입이 쓰시마번의 재정에서 1/4 내지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쓰시마번의 재정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일무역 회계는,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할 때 반드시 이관해야 하는 중요한 재원이었다.

일본 정부, 특히 재정을 관리하는 대장성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장성에서는 폐번치현이 단행되기 이전부터 쓰시마번의 조일무역 회계에 상당 정도로 개입하고 있었다. 대장성에서는 1869년에 기존 ‘번주’(藩主)의 직명을 ‘지번사’(知藩事)로 고치고 가록(家祿)을 번의 석고(石高)의 1/10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번의 재정에 대한 번주의 자율성을 상당히 제한하는 조치였다. 그리고 1870년 음력 9월 10일에는 각 번에 번의 부채를 상환할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고 지번사의 가록과 사졸의 봉록(俸祿), 기타 공공비용을 절약하여 번의 부채를 상환해 나가도록

18 정성일, 『朝鮮後期 對日貿易』, 제6장 「조·일무역과 쓰시마의 재정」 이하를 참조. 1790년 기준으로 쓰시마번의 세입에서 무역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은 36%, 번의 영지에서 거두어들이는 공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31%, 막부로부터 해마다 지원받는 1만 2,000량의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였다. 여기서 말하는 무역 이윤은 수입품 판매총액에서 수출품 조달총액을 뺀 수출 이윤이며, 왜관운영비용과 연례송사비용은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다.

19 田代和生, 『日朝貿易と對馬藩』, 190쪽 이하 「藩財政に占める日朝貿易」 참조.

20 『朝鮮事務書』 권4, 「對州國計」에는 ‘朝鮮國公買益金’이 2만 2,649량이라고 되어 있으나, 물품조달비를 고려하지 않은 순매출로 보인다. 『대주국계』에 따르면 공무역 물품조달비로 금 약 1만 4,196량이 사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순매출액에서 물품조달비를 제하면 순이익은 8,453량 정도이다. 조선과의 교제비는 쌀 약 4,615석, 금 약 4,767량(석, 량 미만의 단위는 생략하였음).

지시하였다.²¹ 이에 대해서 쓰시마번에서는 1870년 윤(閏)10월 곧바로 대장성에 상신하기를, 조일무역 이윤은 본래 번의 세입과는 별개인데 무역 이윤을 가지고 부채 상환에 충당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문의하였다.²²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대장성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이었지만, 행간에 담긴 진짜 의도는 조일무역 회계와 번의 재정 회계 사이에 구별을 짓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쓰시마번의 문의에 대한 대장성의 답변은 단호했다. 쓰시마번은 막부가 건재했던 시기에 바로 이 조선과의 무역 이윤으로 말미암아 석고 10만 석의 번격(藩格)으로 대우를 받아 온 만큼 무역 이윤은 번의 공공연한 조세와 마찬가지로 간주해야 하니, 조선과의 국교가 개정될 때까지는 공무역이든 사무역이든 무역을 통한 이윤은 모두 번의 회계에 포함시키고 번채 상환 등에 충당하라고 지시하였다.²³ 조선과의 무역이 소씨(宗氏)의 특권임을 부각하려는 쓰시마번에 대하여, 대장성에서는 무역 이윤이 번의 조세 수입과 분리될 수 없다고 뜻을 밝은 것이다.

대장성의 이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이로부터 1년 후인 1871년 음력 8월에 쓰시마번이 폐지되었을 때 조일무역 회계는 번의 여타 회계와 마찬가지로 현으로 이관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마리현에 병합된 1871년 음력 9월 경, 돌연 대장경(大藏卿)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와 대장대보(大藏大輔)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연명으로 태정관 정원(正院)에 문서를 상신하면서

21 明治財政史編纂會, 『明治財政史』 제8권, 1926, 28쪽.

22 『朝鮮講信錄』 4, 「元嚴原藩貿易利藩計加不加ノ儀大藏省伺」(1871년 음력 9월 30일)의 부속 문서 「元辨官ノ回答書」, “藩債ハ一藩ノ石高二係リ候者御布令ニ付テハ, 公買ノ利分自然藩計ニ混用候姿成行, 方今ノ御趣意ニ對シテ不都合ニ付, 以來公買之利分藩計ニ加不加之境イツレニ處分仕候テ可然哉.”(구두점 필자)

23 『朝鮮講信錄』 4, 「元嚴原藩貿易利藩計加不加ノ儀大藏省伺」(1871년 음력 9월 30일)의 부속 문서 「元辨官ノ回答書」, 번관의 답변은 “右公貿易之儀ハ, 朝鮮國ニテ宗家ヲ疑(款의 오기인 듯)待スル之意ヨリ出候トハ乍申, 畢竟右等之利潤有之候ヨリ舊幕中拾万石之藩格ニ加リ … 右貿易利潤ハ藩ニ取り公然タル租稅同様之者ニ可有之 … 公買私買ヲ不論一切從前之通藩於テ取扱, 右利潤ハ悉皆藩計算ニ差加 ….”(밑줄 및 구두점 필자) 여기 “사무역과 공무역을 막론하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사무역과 공무역의 구별을 시종 강조했던 외무성과 달리, 대장성에서는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무역서의 부채를 처리할 때에도 일관되었다.

까지 1년 전 대장성의 판단[當省見込]을 번복하고 조일무역 회계의 이관을 보류하였다. 대장성이 이관을 보류한 이유는, 설령 이마리현에서 조선 무역과 관련된 회계를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조선과의 외교 및 무역 사무를 감독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서 대장성에서는 “(조선과의) 교제의 사무는 반드시 정부에서 개정(改正)을 마친 이후에 현관(縣官) 등이 관장하도록 하지 않으면 체재(體裁)에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이윤 역시도 구별하여 현의 정세(正稅), 잡세(雜稅)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계산하여, 추후 (조선과의) 교제비용 등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했다.²⁴

이처럼 대장성은, 쓰시마번이 건재하였을 때에는 무역 이윤으로 번의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나, 폐번치현 이후에는 조선과의 교섭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일무역 회계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나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외무성에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무역 이윤을 향후 조선 정부와의 교제 비용 등에 충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함으로써 책임을 외무성에 넘겼다. 태정관에서는 대장성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일무역 회계 이관을 보류하였다. 이 같은 지침을 받은 옛 쓰시마번의 번주였던 소 시게마사(宗重正)²⁵는 1871년 음력 11월, 외무성에 다음과 같이 상신했다.

조선국 무역 이윤은 본래 자가(自家) 사유(私有)의 것으로서 번계(藩計)와 분리된 것이었습니다만, 본디 세입의 부족이 막대하운데 달리 이를 보충할 방책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무역 이윤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거나 개척(開拓)·식산(殖産)의 자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 지난 겨울 번계 출납의 규칙에 관한 포령(布令)이 있었는데, 그때 조선국 무역 이윤도 번계에 포함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에 따르고자 출납의 회계도 조사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장성에서

24 『朝鮮講信錄』 4, 「元嚴原藩貿易利藩計加不加ノ儀大藏省伺」(1871년 음력 9월 30일).

25 쓰시마번 제16대 번주였던 소 요시아키라(宗義達)는 1869년경 이름을 소 시게마사(宗重正)로 개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명 후 이름인 ‘소 시게마사’로 표기를 통일하였다.

이마리현에 지시하기를 무역 이윤을 정세, 잡세와 구별해야 하니 번계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대장성에서 그렇게 지시한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만, 무역의 이윤은 전적으로 자가(自家)에 관련된 것이라, 제가 지사직(知事職)에서 면직된 이상 사가(私家)의 무역 이윤을 이마리현의 세계(歲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 싶습니다. … 무역 이윤은 제가 재임 중이었을 적에 이미 번계(藩計)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지금에 이르러 자가(自家)의 이윤으로 사유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후 조선국과 담판 교섭도 진행해야 하는데 명확한 뜻을 여쭙지 않고서는 조처를 하기 어려우므로 공사무역의 이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시를 구합니다.²⁶

1년 전 대장성에 문의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 시게마사는 조선과의 무역이 가문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대장성의 취지는 조선과의 국교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는 지방정부인 현에서 무역과 관련된 회계를 넘겨받을 수 없다는 의미였지만, 소 시게마사는 무역 이윤이 본래 세입에 포함될 수 없는 사업상의 이윤임을 강조하는 근거로 삼은 것이다. 게다가 이미 번의 회계에 포함시켰던 무역 이윤을 사유할 뜻은 없다고 하면서도 조선과의 담판을 운운하며 무역 이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은 것은, 비록 지번사직에서는 면직되었으나 조선과의 교섭을 위해서 외무성 관리로 등용된 본인의 역할을 염두에 둔 발언임이 분명하다.²⁷ 그렇다면 정작 조선과의 교섭을 맡아야 할 외무성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 외무성이 1871년 음력 12월경 태정관 정원에 상신하기 위해 작성한 아래 문서의 내용을 보면, 대장성의 결정에 대해 상당한 당혹감을 느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일전에 시게마사에게 내린 지시²⁸와 이번에 대장성에서 이마리현에 내린 지

26 『對韓政策關係雜纂』, 「宗重正朝鮮貿易上ニ於ケル負債額處分ノ件」 1(1871년 음력 11월).

27 소 시게마사는 1872년 음력 7월 29일에 외무대승(外務大丞)에 임명되었다. 이는 쓰시마번 폐지 이후에도 소 시게마사를 계속 조선과의 교섭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였다.

28 즉, 1870년에 무역 이윤을 모두 번의 회계에 포함시키고 번채 상환 등에 충당하라고 지시한 것.

시는 전후 모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宗家)는 이미 조선사무를 취급하는 가역(家役)에서 면제되었으므로 앞으로 무역도 이마리현에서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디만, 지금 만국과 호시무역(互市貿易)을 하기 위해서 개항을 하고서도 유독 조선에 대해서만 일개 이마리현에서 사사로이 무역을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저 세견선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 소가(宗家)의 사사로운 무역으로서, 그동안 자못 불공정한 이윤도 얻어 왔다고 합니다. 일전에 저 나라(조선을 가리킴-필자)에 사절을 파견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그 요령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나, 종전과 다름없이 이 같은 불공부정(不公不正)한 일을 그치지 않는다면 시게마사가 글 중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름과 실상이 어긋나는 일²⁹이 될 것이며, 이는 조위(朝威)에도 관계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견무역은 소가(宗家)의 가역을 면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폐절해야 할 것입니다.³⁰

이처럼 외무성은 일개 번에서 외국에 사신을 보내 진행하는 세견선 무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면서 무역 이윤을 ‘불공정한 수익’이라고까지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쓰시마번이 폐지되었음에도 조선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따라서 조선과의 소통도 여전히 옛 쓰시마번 출신 사족들과 소 시게마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결국 외무성도 폐번치현 사실을 고지하는 것과 세견선 무역 철폐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교제의 사무를 정부에서 개정한 이후에” 회계를 이관해야 한다는 대장성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대장성, 쓰시마번, 외무성에서 조일무역을 바라보는 관

29 원문은 “名實齟齬之儀”. 명목상으로는 ‘공무역’이라고 칭하지만, 실상은 쓰시마번의 ‘사무역’인 ‘불공부정’한 무역을 지속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30 『對韓政策關係雜纂』, 「宗重正朝鮮貿易上ニ於ケル負債額處分ノ件」 1(1871년 음력 12월) 이 문서의 시작 부분에 “메이지 4년 12월 태정관에 보낸 문서 중에 임시로 철폐하여 둘 것[明治四年十二月太政官往書中ニ仮ニ綴込置クベシ]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태정관 정원에 상신할 목적으로 기안하였으나 실제 상신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듯하다. 문서에 외무경의 날인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내용에 대한 외무성 내부의 검토는 완결된 문서인데도 정원에 상신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다.

점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외무성은 ‘공무역’을 반드시 시정해야 할 폐단으로 간주하고, 세견선 파견 중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었다. 조일무역 회계의 이관이 보류된 것에 외무성이 당혹감을 표시한 것은, 이것이 자칫 소 시게마사가 세견선 파견을 지속하는 빌미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대장성은 ‘공무역’이나 ‘사무역’이나 하는 명분상의 논쟁보다는 무역과 관련된 제반 사무와 회계를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다. 다만, 조선과의 교섭은 대장성의 담당이 아니므로, 당분간은 교섭의 추이를 관망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소 시게마사는 옛 쓰시마번의 번주이자 현 외무성 관원으로서, 표면적으로는 외무성의 방침에 협조하면서도 조선과의 외교 및 무역과 관계된 자신의 기득권을 온존하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었다.

이처럼 조일무역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 병존하는 가운데, 당분간 기존에 무역하던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쓰시마번이 폐지되었음에도 조선 무역 사무를 총괄하던 무역서는 폐지도 되지 않고, 타현으로 이관도 되지 않은 채, 사실상 독립된 조직으로 남아서 기존 방식에 따라 조선에 세견선을 보내면서 무역을 해 나갔다.³¹ 조선으로 도항하는 선박에 도항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상인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도 여전히 무역서의 사무로 남아 있었다.

쓰시마번의 회계 중에서 조선과의 무역 회계가 이마리현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당시 일본 정부는 폐번치현을 단행하면서 번의 조세권을 모두 회수하는 대신 부채 또한 모두 인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는데, 대장성의 위와 같은 방침으로 말미암아 조선과의 무역과 관련된 부채는 인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해결되지 않은 부채

31 1873년에 무역서의 부채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외무성이 대장성에 보낸 문서에는 “외 교통(交通)하던 시기에는 이즈하라에 소씨(宗氏) 자기의 무역서를 두고, 현청과는 관계없이 일가(一家)만으로 무역을 운영하였음.”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 즉, 외무성은 쓰시마번 폐지 이후에 존속한 무역서는 현과는 무관한, 소 시게마사 개인의 사조직이라고 간주하였다(『大日本外交文書』 제8권, 98쪽). 이는 일본 정부가 무역서의 부채를 어디까지 인수해야 하는가를 두고 외무성과 옛 쓰시마번이 대립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문제가, 약 1년 후 세건선 파건을 중지할 때 다시 불거져서 외무성과 무역서 간의 첨예한 갈등을 촉발하게 된다.

3. 공무역 중단과 조일무역 부채

1) 공무역 부채와 사무역 부채 논란

쓰시마번 폐지 사실을 고지하는 서계는 이듬해인 1872년 음력 3월경 조선 측에 전달되었고, 외무성은 비로소 세건선 파건 중지와 공무역 관계 청산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후 실제로 태정관 정원에서 논의를 거쳐 세건선 파건 중지를 선언하는 칙지(勅旨)가 내려진 것은 1872년 음력 8월이었다. 이 사이의 약 5개월 동안, 외무성이 방침을 확정해야 했던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무역과 관계된 핵심 쟁점 두 가지는 세건선 파건 중지를 위한 선행 조치로서 옛 쓰시마번이 조선에 대해 지고 있는 부채를 청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과, 왜관에 체류하는 상인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쟁점은 일본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조일무역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 중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칙지의 내용과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쟁점은 쓰시마번의 무역 부채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였다. 이것은 부채를 계산하여 상환하면 끝나는 단순한 문제로 보이지만, 실상은 꽤 복잡한 문제였다. 쓰시마번이 조선에 대해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는 사실은 일찍이 알려져 있었지만, 그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좀처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건선 무역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사실상 불문에 부쳐진 상태였다. 그러다가 비로소 세건선 파건 중지가 눈앞에 닥쳐오자, 부채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외무성 내부에서는 조선에 대한 쓰시마번의 부채를 정부가 인수해서 갚아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쓰시마번의 재정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조선에 대한 부채를 먼저 상환하지 않고서는 외무성에서 그토록 비난하는

〈표 1〉 소 시게마사가 보고한 대(對) 조선 부채내역

부채 성격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도중(都中) 상인들에 미납품*	정동(丁銅)	55,000근(斤)	18량 2분(分) / 100근	10,175량(兩)
공무역 미납품	황동(黃銅)	60,900근	17량 / 100근	10,353량
	연동(延銅)	9,000근	20량 / 100근	1,800량
	단목(丹木)	8,128근	8량 / 100근	650량 240문
	후추(胡椒)	4,800근	15량 / 100근	720량
	명반(明礬)	2,650근	5량 / 100근	132량 2보(步)
	기타 품목 21종**	-	-	351량
	합계			24,181량 740문(文)

* 도중(都中)은 조선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왜관을 출입하던 조선 상인을 가리킴.

** 주로 필기구함[硯箱], 종이함[料紙箱], 장반[丸盆], 거울[鏡], 병풍[屏風] 등 각종 수공업품.

출처: 『朝鮮事務書』 권12(1872. 6. 12.의 부속서 2).

공무역을 중단시킬 명분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³² 따라서 외무성의 입장은 일본 정부가 인수해 주어야 할 부채는 어디까지나 ‘공무역’에 관련된 부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쓰시마번의 무역 부채 중 무엇이 공무역 부채이고 무엇이 사무역 부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려웠다. 이로 인하여 대체 어떤 부채를 얼마만큼 인수할 것인지를 두고 외무성과 쓰시마번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이것이 무역서가 해체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우선 옛 쓰시마번 측에서 보고한 부채의 내역을 살펴보자. 『조선사무서』 권12에는 세견선 중지예 관한 칙지가 내려지기 불과 두 달 전인 1872년 음력 6월 중 소 시게마사가 보고한 부채 내역이 수록되

32 정한론을 지지한 강경파로 알려진 야나기하라 사키미쓰(柳原前光)도 외무권대승(外務權大丞)이었던 1870년 음력 7월경, 그가 작성한 『朝鮮論稿』에서 “(부채를 갚아) 조선 관부에 신의를 나타냄으로써 귀순의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大日本外交文書』, 제3권, 150쪽). 즉, 부채 상환 문제를 외교 교섭의 입구로 활용하려고 생각한 것이다.

어 있다.³³

이 부채 내역을 볼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조선에 대한 부채는 현물로 갚아야 할 부채였다는 점이다. 부채 총액 2만 4,181량 740문은 조선 측에 납품해야 할 무역품의 조달 비용을 당시 물건 시세에 따라 추산한 것으로, 정확한 액수는 아니었다. 이 부채 내역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 이 부채의 상환 여부를 두고 외무성과 옛 쓰시마번 사이의 입장이 어떻게 대립하였는지부터 살펴보자.

위 부채 내역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것과 거의 같은 시기인 1872년 음력 6월 9일, 외무성 고관이었던 하나부사는 당시 쓰시마 현지에 출장 중인 외무성 관원들에게 “(소씨의 부채가) 모두 공무역 체납품만인지, 혹은 사무역으로 인한 사적인 채무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근원과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되므로 사실을 정확히 탐지하라.”³⁴라고 지시를 내렸다. 외무성은 쓰시마번의 세견선 무역을 ‘불공부정(不公不正)한’ 무역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쓰시마번의 공무역 부채를 대신 상환해 주는 데 동의한 것은 어디까지나 조선에 대하여 이 ‘불공부정한’ 무역 방식을 중단할 명분을 쌓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외무성이 ‘공무역’과는 무관한 ‘사무역’ 부채까지 인수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부사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사무역으로 인한 사적인 채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소 시게마사가 보고한 부채 내역 중에 “사무역으로 인한 사적인 채무”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하나부사의 의심에도 근거가 없지는 않았다. <표 1>의 부채 내역을 보면 총액 약 2만 4,181량의 부채 중 약 40%에 해당하는 1만 175량은 조선 정부가 아닌, 도중(都中)³⁵이라는 조선 상인들에 대한 부채였다. 외교적 절차를 밟아

33 『朝鮮事務書』 권12(1872년 음력 6월 날짜 미상).

34 『朝鮮事務書』 권12(1872년 음력 6월 9일).

35 도중(都中)은 조선 정부의 허가를 받고 왜관을 출입하며 일본 상인들과 무역을 한 특허상인들을 가리킨다. 도중에 대한 연구로는 김동철, 「조선후기 왜관 개사무역 상인의 구성과 활동」, 효원사학회,

서 조선 정부와 거래하는 ‘공무역’ 이외의 무역을 모두 ‘사무역’으로 본다 면, 도중 상인들에 대한 부채는 ‘사무역’ 부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사 무역’ 부채에, 소 시게마사가 개인적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빌린 금액이 포 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무역’이라고 하더라도 외국 상인에 대한 부채인 이상, 이것을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한 점 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1871년 음력 8월에 쓰시마번이 폐지된 이후에도 조일무역 회계는 이마리현으로 이관되지 않았고, 옛 쓰시마번의 ‘무역서’가 약 1년 가까이 독립적으로 조선과 무역을 해 왔다는 것이었다. 무역서의 회계는 대 장성에서 “별도로 계산하여 향후 교제 비용 등에 충당”하라는 모호한 방침 아래 사실상 방치되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소 시게마사가 새로 돈을 빌려 무역을 하고 그 이윤을 사유하였다면 이는 “사무역으로 인한 사적인 채무”에 해당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하나부사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하나부사의 지시를 받아 쓰시마 현지에서 무역서의 부채 현황을 조사하던 관원들이,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부채 가 더 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이다. 아래 문서는 쓰시마 현지에 출장 중이 었던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1872년 음력 7월 13일자에 나가사키 현 청에 발신한 것이다.

나가미 텐자부로(永見傳三郎)

다카미 와헤에(高見和兵衛)

위 두 사람과 관련하여, 지금 이즈하라현(嚴原縣)과 조선국의 무역에서 수출품과 수입품의 과부족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이 두 상인이 이즈하라의 무역서에 금자(金子)를 대납(取替)해 온 것이 현재 부채가 되어 있다고 하니, 몇 년 몇 월 얼마

『역사와 세계』 46집, 2014;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에 참가한 상고도중의 규모와 활동 (1844~49)」,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8집, 1998 등을 참조.

를 대납하였는지 상세한 내역에 대한 조사서를 긴급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
하시고, 제출하면 저에게도 회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³⁶

나가미와 다카미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쓰시마번과는 오랜 기간 금융
거래를 해 온 나가사키 지역의 자본가들이다. 즉, 무역서에는 조선 정부나
상인들에게 갚아야 할 부채만이 아니라, 일본 상인들에게 갚아야 할 부채도
있다는 정황이 처음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상인들에 대한 부채의 전
모가 밝혀지는 것은 좀 더 나중의 일이다. 이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1872년 음력 8월 18일 세건선 파견 중지를 확정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담긴 칙지(勅旨)가 외무경에게 하달되었고, 하나부사는 이 업무의 책
임자로 선발되어 곧 조선으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2) 조일무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침

1872년 음력 8월 18일, 외무경에게 하달된 칙지(勅旨)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하나, 초량의 관사(館司) 및 대관소(代官所)는 종전대로 둘 것

하나, 무용(無用)한 사관(士官), 잡인(雜人) 등은 모두 거두어 귀국하도록 할 것

하나, 상인의 거류(去留)는 자유에 맡길 것

하나, 감합인(勘合印)은 구장(舊章)을 그대로 사용할 것

하나, 세건선은 보내지 말 것

하나, 세건무역 체납품[歲遺滯品] 중 소씨(宗氏)의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계산하
여 지불할 것

하나, 대주(對州)에 체류 중인 표민들은 그대로 돌려보낼 것

하나, 이상의 내용을 조선국으로 파견될 외무대승 하나부사 요시모토에게 하달
할 것

36 『朝鮮事務書』 권13(1871년 음력 7월 13일). 수신인은 나가사키현 전사어중(典事御中). 전사란 1871
년부터 1873년까지 각 현에 설치되었던 관직.

이 칙지의 내용을 기초(起草)한 것은 외무성이었다. 그런데 이 칙지의 내용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초량 왜관에 체류 중인 상인들의 거취 문제를 두고, 외무성이 여러 차례 의견을 반복했기 때문이다.³⁷ 앞서 폐번치현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조선으로 출장을 다녀온 외무성 관리들은 조선 측에서 서계를 수령하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초량 왜관에 체류 중인 옛 쓰시마번 사족들은 물론이고 일반 상인들까지도 모두 퇴거시키는 강경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³⁸ 그러나 상인까지 퇴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외무성 상부에서는 결국 1872년 음력 7월 24일, 외무경 명의로 태정관 정원에 “상민(商民)의 경우는 거류(去留) 여부를 각자 자유에 맡길 것”을 건의하였다.³⁹ 하지만 조선 출장에서 돌아온 우라세 히로시(浦瀬裕) 등이 재차 상민 퇴거를 건의하자, 외무성 상부도 결국 강경책으로 의견이 기울어져서 음력 8월 4일에 “상민이라고 하더라도 남김없이 퇴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제출하였다.⁴⁰ 외무성에서 외무경 명의로 이미 태정관 정원에 건의한 내용을 반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만큼 조선 현지의 정세를 확인하고 돌아온 외무성 관리들은 향후 조선 정부와의 교섭 과정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던 것이다.⁴¹

그런데 음력 8월 10일, 외무성에서는 재차 의견을 반복하여, “상인 거류는 자유에 맡길 것”을 건의하였다.⁴² 이때는 외무성 내부에서 어떤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던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과 6일 만에 의견을 다시 반복한 것은, 결국 상민들을 남겨서 계속 무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었음을 시사한다. 음력 8월 10일에 외무경 명의로 태정

37 외무경 명의로 태정관 정원에 세 차례 건의가 상신되었다. 1872년 음력 7월 24일, 음력 8월 4일, 음력 8월 10일.

38 『大日本外交文書』 제5권, 338~339쪽.

39 『大日本外交文書』 제5권, 340쪽.

40 『大日本外交文書』 제5권, 340~341쪽.

41 외무성이 관리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폐번치현 사실을 고지하는 과정은 현명철, 「기유약조제제의 붕괴 과정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 54집, 2016에 자세하다.

42 『大日本外交文書』 제5권, 341~342쪽.

관 정원에 건의한 내용과 음력 8월 18일에 외무경에게 하달된 칙지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몇 개의 자구를 수정한 것을 제외하면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데, 이는 외무성의 음력 8월 10일자 건의가 이미 정부 내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칙지의 의의를 다시 검토해 보면, 이것은 하나부사에게 칙지의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외무성의 독단으로 행동할 수 없도록 제약을 두는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하나부사는 칙지의 내용을 조금도 위반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고자 했다. 초량에 입항할 때에는 조선에서 하사한 감합인을 그대로 사용했고, 초량 왜관에 체류 중이었던 옛 쓰시마번 출신 관리들을 대거 귀국시키되 이를 대체할 관리들을 새로 임명하여 대관소는 유지시켰다. 그리고 상인들의 거취도 자유에 맡김으로써 무역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옛 쓰시마번 무역서의 폐지다. 칙지 어디에도 무역서를 폐지한다든가 혹은 사무역을 중단한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초량의 관사 및 대관소를 종전대로 두고 상인들의 거취를 자유에 맡긴다는 것은 외교적 절차를 수반하는 ‘공무역’은 폐지하되, ‘사무역’은 유지하겠다는 뜻이며, 이것은 “무역은 더욱 번창하게 할 것이며…, 세견선의 유례(謬例)는 단계를 밟아 바로잡아 나가도록 할 것”⁴³이라는 3년 전 일본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부사도 칙지에 담긴 정부의 의중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하나부사 스스로가 조선으로 출장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의 업무 처리 방침을 밝힌 문서를 보면 “사무역이라 칭하는 소씨(宗氏)의 모노폴리(モノポリ) 무역은 나가사키의 당관(唐館) 무역과 본래 같은 맥락의 것으로, 약간 방법을 달리하여 해로움 없이 지속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⁴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가사키의 당관 무역도 일종의 ‘모노폴리’, 즉 독점 무역임은 분명하나, 쓰시마번의 공무역과는 달리 사신을 파견하는 등의 외교적 절차가 수반되

43 『大日本外交文書』 제2권 제3책, 158~159쪽.

44 『大日本外交文書』 제5권, 343쪽.

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나부사는 세견선 무역, 즉 ‘공무역’만 철폐한다면, 소 시게마사의 ‘사무역’은 지속시켜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는 비단 하나부사 개인의 의견인 것만은 아니었다. 음력 9월 25일, 야나기하라 사키미쓰가 조선 현지에 출장 중인 하나부사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기존 사무역의 정태(情態)에 따라서 대주(對州), 나가사키(長崎), 그 밖의 지역에서 이 기회를 틈타 미곡(米穀)을 운수(運輸)하게 된다면 이 또한 사통(私通)을 성(盛)하게 하는 토대가 되어 장래의 방략(方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니, 그 정태와 성패[成否]에 모두 주의를 기울여 천착해 주십시오.”⁴⁵라고 전하고 있다. 만약 외무성의 이와 같은 구상이 관철되었다더라면 무역서는 공무역 기능을 덜어내고, 조직의 체제를 약간 바꾸어 민간회사 내지는 일종의 관영무역회사로 존속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⁴⁶

일본 정부의 방침은 ‘공무역’은 중단하더라도 ‘사무역’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며 오히려 장려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조선과 외교적으로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경제적인 충격은 최소화함으로써 일본 상인들이 계속 조선을 오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장차 조선과의 교섭을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였다. 외무성에서 일본 정부가 인수해 주어야 할 무역 부채를 거듭 ‘공무역 부채’에 한정하려고 한 것도, 사무역은 처음부터 철폐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칙지의 내용을 보든, 하나부사의 구상을 보든, 옛 쓰시마번 무역서의 해체는 예정된 사안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부사의 출장이 무역서의 해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문제의 불씨가 된 것은 “세견무역 체납품 중 소씨(宗氏)의 부채에 해당하

45 『朝鮮事務書』 권15(1872년 음력 9월 25일자).

46 『朝鮮事務書』 권8(1871년 음력 5월 26일자)에 수록된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등의 서신을 보면, 쓰시마번은 폐번되기 직전인 1871년 봄부터 번에 의한 사무역 통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이를 위해서 ‘물화상회’(物貨商會)라는 역소(役所) 같은 건물을 활발히 짓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물화상회’라는 조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쓰시마번이 공무역 중단 이후 어떤 식으로든 조선과 무역을 지속하기 위한 대비를 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는 것은 계산하여 지불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무성에서는 조선에 대한 공무역 부채는 인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소 시게마사가 보고한 ‘공무역 부채 내역’에 사무역 부채가 뒤섞여 있지 않은가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쓰시마 현지에서 무역서의 부채 내역을 조사하던 관원들은 일찍이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일본 상인들에 대한 부채가 더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부사는 우선 소 시게마사가 보고한 내역에 준하여 조선에 상환할 물품을 조달하기로 하고, 1872년 음력 8월 28일 시나가와(品川)를 출항하여 조선 출장길에 올랐다.

4. 무역서의 해체

1) 무역서의 부채내역 조사와 자산 동결

『조선사무서』 권17에 수록된 「하나부사외무대승조선행일첩」(花房外務大丞朝鮮行日涉)(이하 「일첩」이라고 약칭함)에 따르면, 하나부사는 고베(神戸), 오사카(大阪) 등을 경유하여 물품을 조달한 다음 음력 9월 10일 이즈하라항(嚴原港)에 입항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음력 9월 11일부터 곧바로 무역서의 무역담당[貿易掛] 관리 구로이와 다메조(黒岩爲藏)라는 인물을 소환하여 정확한 부채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취조를 시작했다.⁴⁷ 앞서 하나부사의 지시로 외무성 관원들이 쓰시마와 조선 현지에서 무역서의 부채 현황을 조사했는데, 조선의 초량관 대관소에서 보고한 내용, 이즈하라 무역서에서 보고한 내용, 그리고 도쿄에 체재하고 있는 소 시게마사가 보고한 내용이 각각 달랐다.⁴⁸ 이에 대해 구로이와는 도쿄에서 제출한 내역에는 사실 나가사키의 상인 나가미 텐자부로에게서 1870년에 빌린 금 6,400량의 부채를 포함

47 취조를 진행한 것은 모리야마 시게루와 히로쓰 히로노부 두 사람이었다.

48 초량과 이즈하라에서 제출하였다는 내역은 아마도 히로쓰 등이 하나부사의 지시를 받아 1872년 음력 7월 중에 이즈하라 무역서의 부채 현황을 조사하면서 제출받은 내역으로 추정되지만, 그 세부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도쿄에서 제출한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표 1>의 내용을 가리킨다.

하였다고 대답하였다.⁴⁹ ‘나가미 텐자부로’라는 이름은 이미 음력 7월 13일 자에 히로쓰가 나가사키 현청에 조사를 의뢰하였을 때 거론되었다. 외무성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이미 정황을 파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로이와도 이 사실을 순순히 실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취조관은 구로이와에게 이 같은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문서로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구로이와가 제출한 문서의 내용이 모호하여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취조관은 다음 날인 음력 9월 12일 무역서 관리들을 대거 소환하였다. 이때 출두한 무역서 관리는 야오야마 시게지로(青山繁次郎), 마에카와 다베에(前川太兵衛), 야마지 고노스케(山路幸之丞), 무라타 신로쿠(村田眞六) 4명이었다.⁵⁰ 「일섭」에는 이들도 취조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았으나 “애매한 답변을 거듭 규명하며 마침내 내채(內債)를 메우고자(仕埋)⁵¹ 의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서(別書) 부지(附紙)와 같이 서명하게끔 하였다.”라고 결과만 간단히 기록되어 있고, 이들이 서명했다는 문서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대한정책관계잡찬』에는 1872년 음력 9월(날짜 미상)에 작성되었고 위 4명의 이름이 적힌 문서가 있다. 이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본래 도중(都中)들에게 납품하기로 약정한 정동(丁銅)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저들로부터 절박한 요청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다른 물품을 조달하여 메웠던(仕埋) 것으로, 일단 외채는 청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정한 대로 정동을 건네게 된다면, 지난번에 대신 지급한 물품의 대금을 돌려받게 되므로, 이 물품을 조달해 준 자들에게 값을 지불할 계획이었습니다.”⁵²라고 답변하였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정동은 <표 1>의 도중(都中) 상인들에게 미납한 정동 5만 5,000근을 가리킨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조선에 상환해야 할 부채의 규모도 기존 보고와는 달라질 것이었다.

49 『朝鮮事務書』 권17, 「花房外務大丞朝鮮行日涉」(1872년 음력 9월 11일자).

50 전날 취조를 받은 구로이와도 소환 대상이었으나 병을 핑계로 출두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띈다.

51 仕埋(しうめ)란 회계상 구멍이 발생한 것을 메운다는 의미이다. 즉, 여기에서는 조선에 대한 ‘외채’를 갚기 위해서 임시로 ‘내채’를 끌어다 썼던 것을 다시 메우려고 했다는 의미이다.

52 『對韓政策關係雜纂』, 「宗重正朝鮮貿易上ニ於ケル負債額處分ノ件」20(1872년 음력 9월, 날짜 미상).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무역서가 정말로 조선에 갚아야 할 부채가 얼마 인지는 조선 측에서 제시하는 장부와 대조해 봐야만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취조관은 음력 9월 13일에 재차 무역서 관리들을 소환하여, 조선 측과 미납품을 청산하는 절차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그런데 무역서 관리들은 외무성 관원과 조선 측이 직접 소통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이었는지, 답변하는 태도가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많고, 말과 행동에 업신여김과 거짓됨이 적지 않았다.”⁵³ 이에 취조관들은 무역서 관리들을 엄히 질책하는 한편, 외무성 관리 두 사람을 무역서로 파견하여 무역서의 모든 물품을 검사하고 봉인하도록 지시하였다.⁵⁴ 이로써 무역서의 물품은 공무역에 관련된 것이든 사무역에 관련된 것이든 모두 이동과 처분이 금지되었다. 사실상 무역서의 기능이 정지되어 버린 것이다.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 뒤, 하나부사는 음력 9월 15일에 조선으로 출발했다. 조선에 도착한 하나부사는 초량 왜관의 대관들을 통하여 별차(別差)⁵⁵와 도중(都中)들에게 각각 공무역 미납품과 사무역 미청산 내역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다. 관례대로라면 쌍방이 장부를 가져와 완납과 미납 내역을 대조하여 청산하고,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미납품에 대해서는 납품 기일을 정한 다음 문서를 작성하여 날인을 해야 했으나,⁵⁶ 조선 측에서는 입관을 거절하고 미납품 내역을 적은 문서만 회신하였다. 그리하여 별차 측으로부터 「진상물미수기」(進上物未收記)를, 대도중(大都中)으로부터 「세념출급표지」(細念出給標紙)를 전달받았다. 이 중 「진상물미수기」는 『조선사무서』 권18 「왕복서한류」(往復書翰留)에 수록되어 있으나, 「세념출급표지」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아무튼 외무성에서는 조선 측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조달해 온 물품의 내역과 조선 측에서 제시한 부채 내역을 대조하여 「조선국부채상각차인

53 『朝鮮事務書』 권17, 「花房外務大丞朝鮮行日涉」(1872년 음력 9월 13일자).

54 『朝鮮事務書』 권17, 「花房外務大丞朝鮮行日涉」(1872년 음력 9월 13일자).

55 왜관의 훈도(訓導)를 보좌하여 대외(對倭) 문정(問情)을 비롯하여 왜관 업무를 담당한 일본어 통역관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최종 검색일: 2022. 6. 1.).

56 『朝鮮事務書』 권17, 「花房外務大丞朝鮮行日涉」(1872년 음력 9월 13일자). 무역서 관리들에게 조선 측과 미납품 청산 절차에 대해 질문하여 확인한 내용.

〈표 2〉 소 시계마사가 보고한 부채내역, 외무성이 조달한 물품 내역, 조선 측 자료로 확인한 부채내역 비교

부채 성격	품목	단가	①소 시계마사가 보고한 부채	②상환을 위해 조달한 물품 내역	③실제 부채 내역	④차액 (②-③)
			수량	수량	수량	수량
도중(都中)에 미납품	정동 (丁銅)	18량 2분(分)/ 100근	55,000근	55,000근	-	55,000근
	황동 (黃銅)	17량/ 100근	60,900근	60,900근	54,561근	6,339근
공무역 미납품	연동 (延銅)	20량/ 100근	9,000근	9,000근	-	9,000근
	타연동 (打延銅)	-	-	-	9,000근*	-9,000근**
	단목 (丹木)	8량/ 100근	8,128근	8,128근	7,590근	538근
	후추 (胡椒)	15량/ 100근	4,800근	4,800근	4,707근	93근
	명반 (明礬)	5량/ 100근	2,650근	2,650근	2,600근	50근
	기타 품목	-	21종	24종	12종	21종

* 타연동(조선 측 자료에는 숙동(熟銅)으로 표기) 9,000근은 소 시계마사가 보고한 부채 내역에는 없었던 것.

** 외무성에서는 정동 5만 5,000근 중에서 1만 5,000근을 오사가 출납료에 반납하고(1872년 음력 10월 4일), 대신 타연동 9,000근을 조달하여 왜관으로 보내(1873년 양력 2월 10일) 부채 상환에 대비하였음.

출처: ①은 『朝鮮事務書』 권12의 소 시계마사의 부채 내역 보고, ②, ③, ④는 『朝鮮事務書』 권18의 「조선국부채상각차인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서」(朝鮮國負債償却差引書)를 작성했는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조선국부채상각차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채 내역은 조선 측에서 전달한 「진상물미수기」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도중들이 제출하였다는 「세넵출급포지」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있었던 것일까? 무역서 관리의 말대로 사무역 부채는 모두 청산되었던 걸까? 정말로 도중(都中) 상인들에게 상환해야 할 부채가 전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기재하지 않은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아무튼 하나부사가 부채 상환을 위해서 조달해 온 물품 중에서 실제 조선에 상환해야 할 물품들을 제하고도 〈표 2〉의 ④에

해당하는 만큼의 물품들이 남았다. 이것을 소 시계마사가 부채를 보고한 시점의 시세로 계산하면 대략 1만 3,000량 정도가 된다. 실제 조선에 갚아야 할 부채의 액수는 1만 1,000량 정도로 소 시계마사가 보고한 2만 4,181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건무역 체납품 중 소씨(宗氏)의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계산하여 지불할 것”이라는 칙지를 받들고 조선에 온 하나부사는, 한편으로는 조선에 갚아야 할 부채가 과다하게 보고되었고, 한편으로는 보고되지 않은 거액의 내국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채 상환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파된 하나부사로서도 이 건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었다. 게다가 조선 측에서도 기존 쓰시마번 관리를 통해서만 미납품을 전달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하나부사가 조선 체류 중에 부채 상환을 마무리하기란 불가능했다. 결국 하나부사는 조선 측에서 상환 요구가 있을 때까지 물품을 대관소에 보관해 두도록 지시하고 음력 9월 25일 초량에서 출항하여 이즈하라로 복귀하였다.

2) 부채내역 조사 결과와 외무성의 처리 방침

하나부사는 칙지의 내용을 대부분 완수하였으나, “세건무역 체납품 중 소씨(宗氏)의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계산하여 지불할 것”이라는 지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하나부사는 출장 이전부터 무역서의 부채 내역을 조사했고, 출장 중에도 수차례 무역서 관리들을 취조하였지만 무역서의 부채 규모와 성격을 낱낱이 밝혀내지 못했다. 조선 측 관리나 상인들과도 직접 장부를 대조해 보지 못하고, 조선 측에서 보내온 문서에만 의지하여 부채 규모를 정리했을 뿐이다. 게다가 조선 측에서는 옛 쓰시마번 관리와 직접 소통하겠다고 외무성에서 가져온 물품을 수령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껏 조달해 온 물품을 초량 왜관에 그대로 보관해 둘 수밖에 없었다.⁵⁷

또 조선과 조약 체결도 하기 이전에 자유무역을 기정사실로 해 버리기

57 이 물품은 결국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된 이후에 정산된다. 김홍수,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315쪽.

위해서 ‘사무역’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물론 하나부사가 열흘 남짓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출입국절차를 개편하거나 수출입세를 폐지하기도 하고, 심지어 무기와 같은 금수품의 수출도 허락하는 등 사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무역 상대방인 조선 측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였을 뿐만 아니라, 수백 년간 지속되어 온 관습과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⁵⁸ 오히려 외무성의 의도와는 달리, 공무역 폐지 이후 사무역 역시도 위축을 피할 수 없었다.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제도개편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조일무역에서 최대 규모의 무역집단이었던 ‘무역서’의 신용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었다. 하나부사는 이즈하라로 복귀한 이후에도 부채 내역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무역서의 자산을 동결해 놓은 채 시간만 끌다가 음력 10월 21일 도쿄로 복귀하기 위해 이즈하라를 떠나 버렸다.

그사이 이즈하라에서는 무역서의 모든 물품을 봉인해 둔 채, 외무성 주도로 자산과 부채 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대략 음력 11월 중에 마무리되었다. 외무성에서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서에 대한 처분 방침을 태정관 정원에 건의했다.⁵⁹ 먼저 외무성의 조사결과를 살펴보자. 『조선사무서』 권18에는 모두 세 종류의 조사서가 수록되어 있다. ㉠ 「조선국부채상각차인서」(朝鮮國負債償却差引書)는 조선국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조달한 물품 내역과 실제 부채 내역을 대조한 것이다. ㉡ 「공사무역현유품대가적립조」(公私貿易現用品代價積立調)는 이즈하라 무역서와 초량 왜관에 보관되어 있던 재고자산과 현금을 정리한 것이다. ㉢ 「내지부채를 번계에 가산한 금액 등 조사서」[內地負債高藩計ニ差加候高共凡調]는 무역서의 내지 부채 현황과, 내지 부채 중에서 옛 쓰시마번의 경비에 충당된 금액을 정리한 것이다. ㉠의 내용은 이미 앞의 <표 2>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와 ㉢

58 이 시기 조일무역의 현황에 대해서는 김민, 「1872~1876년 과도기의 조일무역연구」, 일본사학회, 『일본역사연구』 55집, 2021을 참조.

59 『朝鮮事務書』 권15(1872년 음력 11월 날짜 미상).

〈표 3〉 무역서 공사무역 재고자산 현황(건적서)

장소	공/사무역 구분	유형	품목	추정(환산)가액
이즈하라 무역서	공무역 관계	현물	백미(白米) 등 22종	1,403엔(圓) 71전(錢) 7리(厘) 4모(毛)
		현물	공준(空樽) 등 24종	2,611엔 33전 3리 5모
	사무역 관계	현금	일본 동전 29,594관(貫) 659문(文)	2,959엔 46전 5리 9모
		무역서 일용품	현물	지필묵 등 잡품 44종
초랑 왜관	공무역 관계	현물	소목(蘇木) 등 13종	138엔 12전
무역서 재고자산 추정(환산)가액 총계				7,186엔 21전 5리 6모

출처: 『朝鮮事務書』 권18, 「公私貿易現有品代價積立調」.

의 내용을 살펴볼 차례다.

먼저 〈표 3〉을 보자. 무역서 재고자산의 가격을 추산하여 장부가액을 산출해 낸 것이다. 동전을 제외하면 모두 현물인데, 상품의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었다.⁶⁰ 게다가 이 조사서 작성 이후에, 나가사키의 옛 쓰시마번 번저(藩邸)에서 비단(海黃)⁶¹ 100필과 당목면(唐木綿)⁶² 600필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하는 등 재고조사 자체도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⁶³ 그러나 외무성에서는 〈표 3〉의 내역을 토대로 태정관 정원에 무역서의 재고자산이 7,000여 엔이라고 보고하였고, 이후 대장성의 무역서 처분도 이 보고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내지부채를 번계에 가산한 금액 등 조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무역서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로부터 차용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받

60 『朝鮮事務書』 권22(1873년 음력 7월 27일). 히로쓰의 보고 내용을 보면 무역서의 재고자산의 매각 대금이 당초 7,000여 엔으로 보고된 것과는 달리, 6,000엔에도 미치지 못할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꼭 최초의 추계가 틀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장 상황의 변동과 장기 보관에 따른 상품 가치의 하락, 그리고 정부에서 불하하는 특성상 입찰에 응하는 상인들의 이익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61 근세 초엽부터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오기 시작한 견직물의 총칭.

62 여기서 말하는 당목면(唐木綿)은 중국을 거쳐 들어온 영국산 면직물류를 가리키는 것이다.

63 『朝鮮事務書』 권21(1873년 양력 5월 21일).

〈표 4〉 무역서의 내지 부채 현황(1872년 음력 11월 기준)

채권자 정보			부채	내용
지역	신분	이름		
도쿄	상인	오와리아(越後屋)의 젠로쿠(善六)외 1인	6,395엔 71전 2리 5모	무역품 조달
도쿄	상인	에치젠야(越前屋)의 지베에(治兵衛) 외 2인	1,200엔	무역품 조달
도쿄	상인	이토 하치베에(伊藤八兵衛) 외 2인	2,000엔	무역품 조달
나가사키	상인	나가미 덴자부로(永見傳三郎) 외 3인	18,670엔 51전 4리	무역품 조달
나가사키	사족	와타나베 사카에(渡辺栄) (永見傳三郎 등이 알선)	2,625엔	무역품 조달
쓰시마	상인	이즈하라 상인들	2,639엔 98전 3리 6모	각종 물품구입비 체불
쓰시마	상인	미우라 다케에몬(三浦武右衛門) 외 7인	2,935엔	저폐(楮幣)의 소각*
쓰시마	상인	가와우에 도시하루(川上歳治) 외 12인	4,230엔 50전	저폐의 소각
총계			40,696엔 71전 1모	

* 원문은 '저폐단재(楮幣斷裁)번이 발행한 어음이라고 할 수 있는 저폐에 대한 지불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상인들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이다.

출처: 『朝鮮事務書』 권18, 『内地負債高藩計二差加候高共凡調』.

아 정리한 내지 부채 내역을 수록하고 있고, 뒷부분은 1869년 음력 10월부터 1871년 음력 9월까지 무역서에서 옛 쓰시마번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이관한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⁶⁴

〈표 4〉를 보면 이즈하라 무역서가 일본 상인들로부터 빌린 돈은 약 4만 696엔이다.⁶⁵ 이 중에서 특히 나가사키 상인과 사족으로부터 빌린 자금의

64 무역서는 1870년에 설립되었으므로, 여기에는 무역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물화소(物貨所) 등에서 지급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65 같은 내역이 『朝鮮事務書』 권18, 19, 『大日本外交文書』 등에 수록되어 있는데, 화폐단위는 모두 엔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對韓政策關係雜纂』에 수록된 차용증 사본을 보면 금액은 모두 량(兩) 또는 전(錢)으로 기록되어 있고, 엔(圓)으로 기록된 것은 없다. 일본에서는 1871년에 신화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적인 화폐 단위인 량(兩)을 엔으로 고쳤다. 이 때문에 외무성에서는 량 또는 전 단위로 된

〈표 5〉 무역서 부채 중 옛 쓰시마번 경비에 총당한 금액

기간(음력)	내지 부채 중 옛 쓰시마번 세입에 총당한 금액	
	금(金)	쌀(米)
1869. 10.~1870. 9.	10,419엔 1전 6리 3모	-
1870. 10.~1871. 7.	7,652엔 10전 7리 8모	637석 3두
1871. 7.~1871. 9.	2,434엔 25전 4리 7모	862석 7두
합계	20,505엔 37전 8리 8모	1,500석

출처: 『朝鮮事務書』 권18, 「內地負債高藩計ニ差加候高共凡調」.

비중이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표 5〉는 관적봉환 이후인 1869년 음력 10월 부터 쓰시마번 폐지 후 이마리현에 합병된 1871년 음력 9월까지 내지 부채 중에서 옛 쓰시마번의 경비 지출에 총당하였다고 무역서 측에서 주장한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외무성의 조사서에 이 내용이 포함된 이유는, 무역서 측에서 이 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돈, 즉 일종의 ‘채권’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무역서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1871년 무역서의 회계를 이마리현 세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대장성의 방침 때문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표 6〉은 어디까지나 외무성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무역서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⁶⁶ 아무튼 외무성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서에 대한 처분 방침을 정하였다. 우선 조선국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조달한 물품 중 공무역 부채에 해당하는 물품은 상환 요구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고, 잔여 물품은 매각 후 그 대금을 외무성이 장악한 초량 공관의 공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공무역 부채 상환에 총당하고 남은 현물로 무역서의 내지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다음으로 4만 696엔의 내지 부채에 대해서는 차입한 시

부채 내역을 취합한 다음, 이것을 엔 단위로 환산하여 표기해 놓은 것이다. 1량은 1엔이므로, 이 두 단위는 바꾸어 써도 무방하다.

66 무역서는 외무성의 조사에 비협조적이었고, 부채에 대한 조사도 채권자들의 자진신고에 의존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표 6〉 외무성이 조사한 무역서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자산	부채
I. 재고자산 ① 공무역 재고: 1,541엔 83전 7리 4모 ② 사무역 재고: 5,570엔 79전 9리 4모 ③ 무역서 일용품: 73엔 57전 8리 8모 (소계: 7,186엔 21전 5리 6모) II. 대 조선 부채 상환을 위한 정부 조달품 ① 공무역 부채 상환 총당: 약 11,000량 ② 상환 총당 외 잔여품: 약 13,000량 (소계: 약 24,000량) III. 옛 쓰시마번에 대한 채권 ① 현금: 20,505엔 52전 5리 5모 ② 현물: 쌀 1,500석	I. 조선국 부채 ① 공무역 부채: 약 11,000량 ② 사무역 부채: 없음 II. 내지 부채 ① 차입금: 40,696엔 71전 1모

출처: 『朝鮮事務書』 권18, 『朝鮮國負債償却差引書』, 『公私貿易現有品代價積立調』, 『內地負債高藩計二差加候高共凡調』를 토대로 작성.

기와 목적 등을 확인하여 공무역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정부에서 인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소 시게마사 개인의 부채로 귀속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압류 중인 자산도 마찬가지로 공무역 물품은 정부에서 인수하고, 사무역 물품은 소 시게마사에게 돌려주겠다고 결정했다. 외무성에서는 이 방안을 태정관 정원에 건의하여 재가를 얻어냈다.⁶⁷

사무역 물품을 소 시게마사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을 보면 이때까지도 외무성에서는 무역서의 사무역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조일무역이 ‘가업’이라고 주장해 왔던 소 시게마사 측에서 이 방침 이후로 입장의 변화가 감지된다. 외무성의 자산 동결조치로 무역서는 이미 회복하기 힘든 수준의 타격을 입고 있었고, 또한 외무성의 처분 방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수만 엔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소 시게마사가 조선에 상환해야 할 부채 내역을 보고할 때 거액의 내국

67 『朝鮮事務書』 권15(1872년 음력 11월 날짜 미상). 외무성에서 태정관에 방침을 건의한 것은 1872년 음력 11월이고, 태정관에서 대장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재가한 것은 1873년 양력 3월이다.

부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세견선 중지 이후에도 ‘사무역’ 형태로 무역서의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무성의 조사 결과를 보면 무역서의 재고자산은 약 7,000엔 정도인 것에 비해 부채는 5만 엔 이상으로 심각한 부실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로부터 조달 받은 현물로 조선국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물품은 조선의 상품과 교환하여 내지 부채를 상환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을 것이다. 무역서의 신용으로 빌린 내지 부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담보도 설정하지 않았고, 무역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월 1.5%의 이자만 부담하면 꽤 장기로 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이즈하라 무역서가 나가사키 상인 다카미 와헤에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을 예시로 살펴보자.

하나, 금 200량, 이자 42량

신미(1871년) (음력)6월부터 임신(1872년) (음력)7월까지 14개월간

이상은 당목(唐木)을 매입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여 차용하는 바 틀림없음,
또한 변제 방법은 교역품 첫 도착분을 매각하여 변제할 것

신미년(1871년) (음력) 6월

이즈하라현저(嚴原縣邸)

다카미 와헤에 님(高見和兵衛殿)⁶⁸

원금 200량에 대하여 14개월간 이자가 42량이므로, 월 이자는 3량, 월 이율은 1.5%다. 이 차용증에는 상환 기간이 1872년 음력 7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별도로, 교역품 첫 도착분[交易品初達]을 매각하여 변제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다. 이것은 무역서에서 상품을 조달할 때 그 대금을 나가사키 상인이 대납하고, 차후 무역서에서 조선산 무역품을 가져와서 나가사키에서 매각하면 그 매각 대금이 우선적으로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다는 의

68 『對韓政策關係雜纂』, 「宗重正朝鮮貿易上ニ於ケル負債額處分ノ件」 20(1871년 음력 6월).

미이다. 이는 당시 쓰시마 상인들이 나가사키 상인들을 통해서 조선에 팔 수출품을 조달하고, 반대로 조선에서 가져온 상품을 마찬가지로 나가사키 상인들을 통해서 매각했던 당시의 무역 구조 속에서 생겨난 거래 관행으로, 오늘날 기업의 ‘당좌대월’(當座貸越)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다만 상환 기간을 14개월 후로 지정한 것은 혹시 무역이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14개월 안에는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⁶⁹

이처럼 무역과 금융은 불가분의 관계였는데, 이는 비단 쓰시마 상인과 나가사키 상인 간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대한정책관계잡찬』에는 무역서에서 도쿄 상인 아리미네야(有峯屋)의 켄조(善藏)라는 인물로부터 각각 금 500량과 700량씩 총 1,200량을 빌린 차용증이 수록되어 있다.⁷⁰ 이 켄조라는 인물은 미쓰이(三井) 오복점(吳服店)의 지배인도 겸하고 있었던 모양으로, 멀리 도쿄의 상인이 쓰시마의 무역서에 자금을 빌려준 이유는 조선산 소가죽을 납품받기 위해서였다고 한다.⁷¹ 그런데 무역서가 해체되어 소가죽을 입수할 길이 막히게 되자, 켄조는 이즈하라의 상점 미키야(三木屋)를 대리자로 삼아 조선 상인과 직접 거래를 타진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조선 현지의 쓰시마 상인들과 조선 관헌에게 발각되어 큰 사달이 나기도 하였다.⁷² 이처럼 조일무역은 조선 상인과 일본 상인이 접하는 ‘왜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접점의 배후에 있는 시장과 상인, 금융업자들이 밀접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외무성에서는 무역서의 자산과 부채의 규모와 성격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거래를 정지시켜 놓고 채권자들에게는 일일이 차용증을 제출하게 하여 사무역 부채를 소 시게마사에게 귀속시킨다고 하자, 채권자들이 앞다퉈 무역서에 상환을 요구하게 되었다.⁷³ 무역서 측에서는 정부가 조달

69 『對韓政策關係雜纂』, 「宗重正朝鮮貿易上ニ於ケル負債額處分ノ件」 20에 수록되어 있는 다른 차용증 중에는 상환 기간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70 『對韓政策關係雜纂』, 「宗重正朝鮮貿易上ニ於ケル負債額處分ノ件」 3(1872년 음력 10월).

71 『朝鮮事務書』 권19(1873년 양력 1월 21일).

72 김민, 「1872~1876년 과도기의 조일무역연구」, 54~55쪽.

73 『大日本外交文書』 제8권, 96쪽. 자신들의 채권이 소씨(宗氏)의 사적 채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채권

해 준 동(銅)을 조선에 매각한 대금으로 내지 부채를 상환한다는 계획이 틀어졌고, 무역서의 자산이 동결되어 당장의 상환 요구에도 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무역서 측에서는 무역회계를 이마리현의 세계와는 별도로 하라는 대장성의 지시를 근거 삼아 판적봉환 이후 무역 이윤으로 쓰시마번의 세입에 충당해 온 금액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당초 무역서 측에서는 외무성에 “오년(午年, 1870년) 이래 번비(藩費)에 충당하기 위해서 빌려준 금액”이 금 3만 168량과 쌀 1,350석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⁷⁴ 그러나 외무성 측에서는 이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과거 쓰시마번이 폐지될 당시 회계 이관을 위해서 사가현청에 제출한 자료와 대조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1869년 음력 10월부터 1871년 음력 9월까지 “한지(韓地) 무리(賃利) 중에서 번계(藩計)에 포함시켜 지불”한 금액은 금 2만 505량과 쌀 1,500석이라고 되어 있다.⁷⁵ 이는 「내지부채를 번계에 가산한 금액 등 조사서」(〈표 5〉 참조)에 기재된 금액인 2만 505엔, 쌀 1,500석과 일치한다.⁷⁶ 그런데 돈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다르다. 전자는 이 금액이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후자는 일본 상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후자의 표현은 해당 금액이, 사실상 일본 내지 상인들이 무역서를 통해서 쓰시마번에 빌려준 돈이라는 채권적 성격을 부각하기 위해서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⁷⁷ 무역서는 정부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해 놓고, 동요하는 채권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 돈을 돌려받으면 부채를 상환할 것이라고 설득하면서 자산 동결 조치가 해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⁷⁸

자[金主]들이 물려와 변제를 요구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74 『太政類典』 제3권, 「舊畿原藩貿易署負債ヲ公債トス」(1878년 양력 12월 5일자).

75 『對韓政策關係雜纂』, 「宗重正朝鮮貿易上ニ於ケル負債額處分ノ件」 20(1872년 음력 10월).

76 이 역시도 원자료의 ‘량’을 ‘엔’으로 고친 것이다. 주 65 참조.

77 외무성에서도 이 주장의 실체까지는 규명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 “위의 빌린 자금 중에서 번계에 가산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右借入金ノ内ヨリ藩計ニ差加候旨申立候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78 당장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상환 요청에 응할 수 없게 되자, 무역서 관리[貿易掛]들은 채권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향후 무역 이윤뿐만이 아니라 과거 무역서 자금으로 옛 쓰시마번의 경비에 충당한 돈을 정부로부터 돌려받아서 변제할 것이라는 약속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옛 쓰시마번의 상사(上

그러나 1872년 음력 9월경 시작된 조사는 해를 넘겨서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태정관 정원에서 외무성의 상신을 받고 대장성에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은 1873년 양력 1월의 일이었고, 대장성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은 3월부터였다. 이 조사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역서의 자산은 여전히 동결된 상태였고, 무역을 할 수도, 빚을 갚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점차 상환해야 하는 이자만 불어나고 있었다.

3) 소 시게마사의 반론과 대장성의 처분

태정관 정원을 통해서 무역서의 현황에 대한 외무성의 조사 결과와 함께 후속 조치를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은 대장성은, 1873년 양력 3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먼저 대장대보 이노우에 가오루 명의로 나가사키 현청에 옛 쓰시마번의 내국 부채 4만 696엔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름과 연도, 내역 등을 명료하게 기재하여 회계장부와 함께 대장성으로 제출하라고 지시를 하였다.⁷⁹ 외무성의 신속한 자산 동결 조치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무역서 측에서도 이때부터는 대장성을 상대로 적극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소 시게마사나 무역서 측이 대장성과 주고받은 문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대장성에서 소 시게마사 등으로부터 입장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외무성, 태정관 등에 문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문서들이 『대일본외교문서』에 수록되어 있어서, 간접적으로나마 무역서 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1873년 양력 11월 4일, 대장성에서는 외무성으로 한 통의 질의서를 보낸다. 그 내용은 무역서의 부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 시게마사 측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해 보니, 외무성에서 태정관에 보고한 것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확인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⁸⁰ 외무성에서는 무역서의 부채

士)인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에게 탄원하였다. 『對韓政策關係雜纂』, 「宗重正朝鮮貿易上ニ於ケル負債額處分ノ件」 20(1872년 음력 9월).

79 『朝鮮事務書』 권19(1873년 양력 3월 4일자).

80 『大日本外交文書』 제8권, 97쪽.

와 자산 모두 공무역에 관계된 것은 정부에서 인수하고 사무역에 관계된 것은 소 시게마사 개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나, 소 시게마사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하였다. 첫째, 소 시게마사는 1871년 지번사직에서 면직된 이후에 사사로이 무역을 한 적이 없으며, 둘째, 조일무역은 성격상 본래 공사의 구분이 불가능한데 다만 조선에서 정부와 상인의 무역을 구분하는 제도 때문에 명칭이 둘로 나뉘었을 뿐이고, 셋째, 본래 쓰시마번에서는 무역 이윤을 번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세입에 충당해 왔으므로 무역으로 인한 부채 역시 모두 번의 부채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선과의 무역에 공과 사의 구별이 없다는 것은, 공무역이든 사무역이든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모두 번의 세입에 충당되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역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소 시게마사 개인이 아닌 번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과거에 조선과의 무역은 소씨 가문의 사업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입장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미 무역서의 폐지를 전제로, 공무역과 사무역, 외채와 내채의 구분 없이 모든 부채를 관에서 인수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외무성에서는 즉각 반박하는 답변서를 보냈다.⁸¹ 외무성에서는 쓰시마번이 폐지된 이후에도 소씨가 “이즈하라에 소씨 자기(自己)의 무역서를 두고 현청과는 관계없이 일가(一家)만으로 무역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시기 동안 무역을 하면서 생긴 재고자산과 부채는 소 시게마사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소 시게마사의 사적인 무역으로 발생한 채무가 공무역 부채나 쓰시마번의 번채에 혼입되었다는 혐의를 끝까지 거두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무역서 부채 처분에 관한 최종 판단은 대장성의 몫이 되었다. 『대일본외교문서』에는 외무성과 소 시게마사 사이의 논쟁 과정이 불과 몇 개의 문서로 간단히 정리되어 있지만, 대장성에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윽고 1875년 양력 5월

81 『大日本外交文書』 제8권, 98~99쪽.

24일, 대장성에서는 소 시게마사가 지번사에서 면직된 이후에도 세견선 파견이 완전히 중지될 때까지는 부득이하게 ‘일국’(一局, 즉 무역서)을 열어 두고 조선과 통교를 해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 또 무역의 이윤을 번현(藩縣)의 경비에 충당했으며, 쓰시마번이 폐지되어 이마리현으로 합병될 때 무역 관련 부채는 번체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무역서의 모든 내지 부채를 공채로 바꾸어 정부에서 인수하고, 그 대신 무역서의 재고자산도 마찬가지로 모두 매각하여 정부에서 인수하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1875년 양력 6월 17일, 일본 정부는 대장성의 방침을 그대로 확정하고, 이를 소 시게마사에게 통보하였다.⁸² 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로 무역서의 기능이 정지된 지 약 2년 9개월 만의 일이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쓰시마번에서 조일무역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였던 무역서가 해체되는 과정을, 무역서의 부채 정리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과의 공무역을 중단하기 위해서 먼저 부채를 갚는다.’라는 명제는 간단했지만, 이 명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다. 누가, 어떤 부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갚아야 하느냐는 문제는 조선 정부와 상인, 쓰시마번의 번주 이하 사족과 상인, 나가사키와 도쿄 자본가들, 일본의 외무성과 대장성 등 조일무역에 관계된 모두의 이해가 얽혀 있는 문제였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각자의 입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1872년 음력 9월 13일, 하나부사의 지시로 무역서의 모든 자산이 봉인된 것은 일차적으로는 부채 현황을 사전에 투명하게 보고하지 않은 무역서의 책임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간

82 『大日本外交文書』 제8권, 97쪽.

의 갈등이 표면화한 것이었다. 외무성은 공무역은 중단시키되 사무역은 더욱 장려하여 장차 조선과의 교섭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했음에도, 세건선 파건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무역 부채를 청산해야 한다는 명분에 집착하여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과 자본가들이 입게 될 피해도 고려하지 않고 자산 동결과 회계 조사를 강행하였고, 이는 결국 조일 간의 최대 무역집단이었던 무역서의 신용을 붕괴시키고 사무역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편 대장성은, 쓰시마번이 폐지되기 이전에는 무역 이윤으로 번의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시하는 등 번의 회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나, 폐번치현 이후에는 오히려 조선과의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일무역 회계의 이관을 보류시켜 놓고, 이 문제에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외무성의 교섭 과정을 관망하였다. 이로 인하여 조일무역 부채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였으며, 쓰시마번 폐지 이후 소 시게마사가 무역서를 통해서 사적으로 무역을 하였다는 의심의 빌미가 되었다.

전통적인 교린 체제와 기존의 무역 방식을 유지하고자 한 조선 정부와의 교섭은 논외로 치더라도, 일본 내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집단의 갈등을 조정하여 무역서의 모든 부채는 외채, 내채를 불문하고 정부에서 인수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기까지 무려 3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역서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고 해체되었다. 1872년 음력 9월경 무역서의 기능이 갑자기 정지되고 이후 결국 해체에 이르게 된 사건은 조선과 일본이 무역을 하는 방식과 내용 모두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무역서가 보유하고 있던 수많은 무역상품이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였고, 쓰시마 현지는 물론 나가사키와 도쿄의 상인들이 투자한 합계 5만 엔 이상의 자금이 3년 가까이 묶여 있었다. 1879년에 옛 쓰시마번 출신 사족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제102국립은행의 자본금이 5만 엔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한 거금이었다. 자금이 묶여 있는 동안 채권자들이 겪은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이다.

한때 300명을 넘나들었던 초량 왜관의 체류 인원은 외무성이 왜관을 일

방적으로 '접수'하는 과정에서 80명 정도로 급감하여, 조일수호조규가 체결 될 때까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처럼 물류, 자금, 인원 등 모든 면에서 규모가 수축되어, 조일무역은 “약간의 잠상(潛商)들만이 쌍방(雙方)의 묵허(默許) 속에 서로 교정(交情)을 이어 가”는 상황으로 후퇴했다. 무역이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조선 측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정부로서는 동(銅)과 같은 필수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조달처이자 수백 년에 걸쳐 신뢰를 쌓아 온 무역파트너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후 조선과 일본의 무역은, 쓰시마번이라고 하는 무역의 관리자이자 주체가 퇴장함으로써 생긴 커다란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260년간 유지되어 온 전통적 무역체제가 와해되는 한편 근대적 통상조약은 여전히 체결되지 못한 과도기적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⁸³

83 쓰시마번이 조일무역 구조에서 완전히 퇴장하게 된 이후부터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되기 이전까지의 과도기적 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김민, 「1872~1876년 과도기의 조일무역연구」, 『일본역사연구』 55집, 2021)에서 다루었다.